

「2025년 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」참여 기업 모집 3차 공고

「지방보조금법」제7조제2항 및 「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6조에 따라 2025년 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4. 2.

당진시장

1. 지원대상 및 규모

가. 사업명 : 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

나. 지원규모 : 금550만원 (금오백오십만원) / 1개 기업

→ 총 사업비의 10%이상 자부담 필수

○ 기업 내 여성휴게실(수유실) 공간 조성 비용

- 도배 및 리모델링

○ 여성휴게실(수유실)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비용

- 휴게실에 필요한 냉난방기, 침대, 사물함(옷장), 소파 등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

○ 보조금의 70%이상은 공간조성 비용에 사용되어야 함

다. 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·소제조업체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 중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

라. 지원 제외 대상

○ 임대 건축물에 휴게실 조성 예정인 기업

○ 지급일 기준 당진시 지방세 체납업체

○ 유사사업으로 휴게실 조성을 지원받은 기업

○ 심사기준 미달(기준점수 60점 이하)인 기업

○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

○ 시설물 유지 동의(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 유지)가 어려운 사업

마. 선정방법

○ 서류심사 후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 순위로 결정

○ 가족친화인증기업, 여성기업 등 가점 부여(심사기준표 참조)

바.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
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) 제출 * 확인 후 보조금 교부가능
-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취소 시 향후 2년 동일 지원사업 참여 제한
- 2025. 11. 30.(일)까지 공사 후 2025. 12. 12.(금)까지 정산완료 해야함

2. 지원절차

-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⇒ 신청 및 접수 ⇒ 사업 소관부서 검토 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⇒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⇒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⇒ 사업 추진 및 완료 ⇒ 현장확인 후 지방보조금 지급

3. 지원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4. 2.(수) ~ 2025. 4. 11.(금)까지 *미충원시 수시 모집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2025. 4. 11.(금)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)
- 접수처 : 당진시청 8층 기업육성과 기업육성팀 (☎041-350-4564)
- 제출서류 :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, 단체소개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 등

4.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

- 심의기관 :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- 심의기준 :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, 적법성 등 종합 고려
- 결과통보 :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법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29호)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계약 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지방계약법」을 준수해야 함.

- 공사비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야함.
- 사업비 20백만원(VAT제외) 이상인 공사,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해야함.
- * 단,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)
 -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공사, 물품제조, 구매용역 : 시공업체가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함.(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 제출)
 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.
- 상세한 내용은 기업육성과 기업육성팀(☎041-350-45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지방조조금 지원 신청서식 1부. 끝.

5. 기대효과

1) 사회적 기여도

*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

2)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

*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

3) 성과목표

*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(N명이상 교육, 만족도 N점 이상)

6.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

○

7. 설치시설물 사후 관리 계획

○

9.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

<세입예산>

(단위 : 천원)

비 목		금 액	세 입 내 용
합 계			
자 체 수 입	소 계		
	자부담		○
보조금 수 입	소 계		○
	시비 보조금		○

<세출예산>

(단위 : 천원)

세부 사업명	예산 항목	세부 항목	금액	산 출 기 초	
합계					
기업체 여성휴게실 (수유실) 조성사업	보조금 소계				
	인건비 (수당)	강사료		○단가(원)× 수량(명, 부, 회 등) = 천원	
		회의참석비			
		단순인건비			
	자산 및 물품취득 비	홍보비			
		인쇄비			
		사무용품비			
		--			
	시설비	임차료			
		식비			
		국내여비			
		--			
	자부담 소계				

※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

※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,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

※ 산출기초의 강사료, 원고료, 회의참석수당, 식비 등 지급단가는 「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」 및 「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, 지출항목별 집행기준,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적용. 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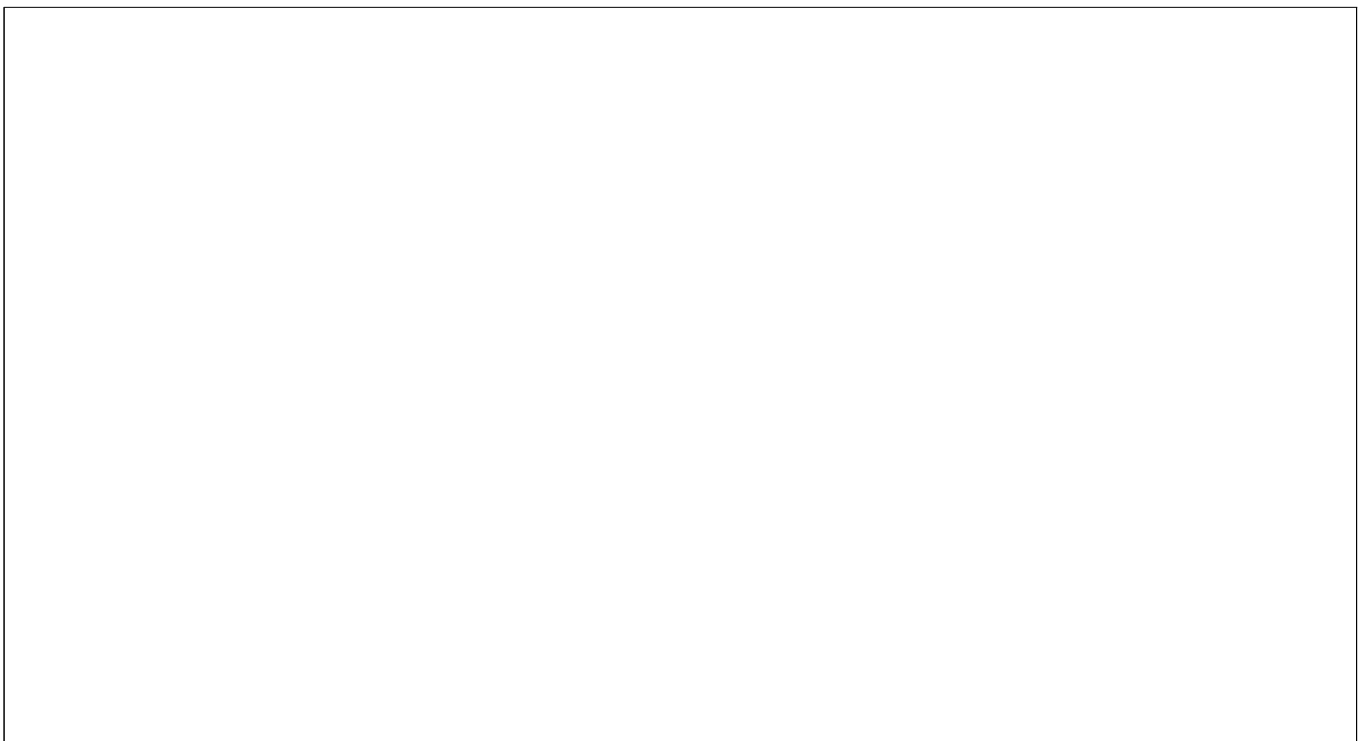
,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

10. 위치도 및 현장사진(휴게실 설치 예정 및 물품설치 공간)

위 치 도



현 장 사 진



자부담 협약서

- 사업명 : 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
- 사업내용 :
- 총 사업비 :
- 자부담 금액 :

본 업체는 “2025년 기업체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” 추진에 따른 자부담액을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부담하고,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협약합니다.

2025. . .

참여기업명 :

대표자 : (인)

시설물 유지동의서

본 업체(대표)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당진시에 반환(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)할 것을 약속합니다.

<보조금 전액 반환사유>

-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
-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·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
-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한 경우
 - ※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.
 - ⇒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하여 수시 점검 예정

2025. . .

참여기업명 :

대 표 자 : (인)

[붙임] 여성휴게실(수유실) 조성사업 심사 기준표

<< 업체명 : >>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배 점	평 가	내 용
사업계획 (60)	사업계획의 타당성	20		□ 사업 계획의 적절성 -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여부 등 -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
	예산편성의 적절성	20		□ 환경개선 사업비 산출내역 등 소요 예산 편성의 적합성
	자부담예산 집행계획	20		□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 50%이상(20), 40%이상(18), 30%이상(16), 10%이상(14)
사업효과성 (20)	사업의 효과성	20		□ 여성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도움 여부 □ 기업 환경 효과 장기 지속 가능 여부
가점 (20)	경제활성 및 시책참여도	20		□ 사업 신청일 기준 각2점 · 여성기업(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) · 가족친화인증기업 ·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, 농공단지 내 입지기업 · 당진시 1사1촌 협약기업 ·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· 장애인기업 · 사회적기업 · 수출기업 · 국외시장개척 또는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업체 · 근로자기준법 제41조에 따른 '근로자명부'기준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60%이상인 기업
총 점				

2025. . .

확인자 소속(부서) 당진시 기업육성과 직급 :

성명 :